

## 4장

## 투자인센티브

## FDI Incentives

## 1. 조세 지원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관세 등을 감면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 조세감면 신청절차 및 추정
- 기타 조세지원

## 1-1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 (1)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감면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투자부분은 조세감면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국내 거주자의 해외 우회투자(round trip)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합니다.

〈외투기업 조세감면 요약 - 조특법§121조의2, 조특령§116의2 등〉

## 1) 법인세 7년간 감면(최초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50%만큼 감면)

구분	투자요건 등
(1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과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4)	•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 달러 이상일 것

구분	투자요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li> <li>* 종전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으로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3천만 달러 이상</li> <li>• 시스템통합·관리, 자료처리 등: 3천만 달러 이상</li> <li>• 관광·휴양업: 2천만 달러 이상</li> <li>• 국제회의·청소년수련 시설: 2천만 달러 이상</li> <li>•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li> <li>• SOC: 1천만 달러 이상</li> <li>• R&amp;D: 2백만 달러 이상</li> <li>• 공동사업: 3천만 달러 이상</li> </ul>

**2) 법인세 5년간 감면(최초 3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50%만큼 감면)**

구분	투자요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의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1호</li> <li>• (2호의8)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li> <li>• 엔지니어링, 시스템통합·관리 등: 1천만 달러 이상</li> <li>• 관광·휴양업: 1천만 달러 이상</li> <li>• 국제회의·청소년수련 시설: 1천만 달러 이상</li> <li>•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li> <li>• 의료기관: 5백만 달러 이상</li> <li>• R&amp;D: 1백만 달러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의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8의3.①,②</li> <li>• (2호의9)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시행자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8.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억 달러 이상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의4)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6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1억 달러 이상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의5)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li> <li>•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의6)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등: 1천만 달러 이상</li> <li>•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li> <li>• R&amp;D: 2백만 달러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의7)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0.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억 달러 이상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호)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①, 2호와 5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li> <li>•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li> </ul>

감면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사업개시일의 기준**

-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증자의 경우에는 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며,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

합니다. 유상감자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을 결정하고 증자 후 감자하는 경우에는 증자분이 우선 감자된 것으로 봅니다. 단, 순수 내국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위의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감면세액 계산방법 〉

구 분	계 산 방 법
1) 신규 투자 시 감면세액계산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left( \frac{\text{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text{총 과세표준}} \right) \times \text{감면비율}$ $\text{감면비율} = \left( \frac{\text{외국투자가 자본금}}{\text{총 자본금}} \right) \times \text{당해사업연도의 감면율}(100\%, 50\%)$
2) 증자나 합병 시 감면세액계산	<p>① 일반적인 경우</p> $\text{감면세액} = \left(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text{총 과세표준}} \right) \times \text{감면비율}$ $\text{감면비율} = \frac{(\text{증자전 외투자본금} \times \text{감면율} + \text{증자시 외투자본금} \times \text{감면율})}{\text{총 자본금}}$ <p>* 감면율: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0%가 적용</p>
	<p>②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p> $\text{감면세액} = \left(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증자분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text{총 과세표준}} \right) \times \text{감면비율}$ $\text{감면비율} = \frac{\text{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투자본금}}{\text{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총 자본금}} \times \text{당해사업연도의 감면율}(100\%, 50\%)$
	<p>③ 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을 통하여 감면사업을 수행하는 경우</p> $\text{감면세액} = \left(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text{총 과세표준}} \right) \times \text{감면비율}$ $\text{감면비율} = \frac{(\text{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투자본금} \times \text{감면율})}{\text{총 감면대상 외투자본금}} \times \text{외국인 투자비율}$ <p>* 감면율: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0%가 적용 *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 투자자본금 ÷ 총 자본금</p>

※ 조세감면의 한도

감면기간 동안 감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아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의 금액
  - 가.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 나. 기타의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1) + 2) + 3)의 금액
    -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 수 × 2천만 원
    - 2) '1)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 원
    - 3)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 1)의 졸업생 수 - 2)의 근로자 수] × 1천만 원
  -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40%(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 또는 30%(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

\* 외국인투자누계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 달러 이상일 것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과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4)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과 같이 반드시 새로운 공장이나 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치 또는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운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총 157개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4: 소재 기술 7개, 공정 기술 4개(총 11개 기술)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11개 분야)

-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 (지능정보)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스마트기기, IT융합
- (차세대SW 및 보안) 기반SW, 융합보안
- (콘텐츠) 실감형콘텐츠, 문화콘텐츠
-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지능형반도체 · 센서, 반도체등소재, OLED, 3D프린팅
- (차세대방송통신) 5G이동통신, UHD
- (바이오 · 헬스) 바이오 · 화합물약, 의료기기 · 헬스케어, 바이오농수산 · 식품
- (에너지신산업 · 환경) ESS,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원자력
-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초경량금속, 하이퍼플라스틱, 타이타늄
- (로봇) 첨단제조로봇, 안전로봇, 의료 및 생활로봇, 로봇공동
- (항공 · 우주) 무인이동체, 우주

## (2)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기간과 동일하게 세액감면을 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모두 사업개시일부터 3-5년간은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감면대상세액)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합니다. 단, 과세대상 재산을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조세감면 결정을 받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100% 전액을 감면하고,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5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를 감면합니다.

그밖에 조례에 의해 지방세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3) 관세 등 면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의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 등을 면제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자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관세 등 면제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해 적용되며,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모두를 면제하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특정 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등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 신청기관: 통관지 세관

▶ 제출서류

- 관세면제신청서
-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 현물출자 또는 현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감면결정서)
- Invoice, B/L 또는 AWB, 가격신고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현물출자 완료확인

- 외국인투자가가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 상법 규정에 따라 검사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이러한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상업등기법 규정(제80조)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외국인투자가가 현물로 출자되는 자본재를 도입한 후 관할법원에 자본등재를 하고자 할 경우 KOTRA에 파견된 관세청 파견관으로부터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 현물출자 완료확인 신청서 2부
- 수입신고필증

※ 자본재 통관절차

절차	관련기관
투자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TRA 및 외국환은행</li> <li>• 투자신고서 2부</li> </ul>
↓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 KOTRA</li> <li>• 확인대상: 관세면제대상자본재</li> <li>• 신청서 3부, 가격증명서류(물품매도확약서, 계약서 등)</li> </ul>
↓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필요</li> <li>• 면제신청서(세관), 투자신고서</li> <li>• 조세감면결정서, 송장,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B/L, Packing List</li> <li>•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li> </ul>
↓	
현물출자완료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및 확인기관: KOTRA 관세청 파견관</li> <li>• 현물출자완료확인 신청서</li> <li>• 수입신고필증</li> </ul>
↓	
회사설립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소</li> <li>• 등기신청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li> </ul>
↓	
외투기업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투자신고 장소</li> <li>• 법인등기부등본, 현물출자완료확인서</li> </ul>

## 1-2 조세감면 신청절차 및 추정

### (1) 조세감면의 신청

#### ①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전에 조세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이내에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사전확인신청의 효과는 고도기술여부를 단순히 사전 확인하는 것으로 조세감면 결정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인투자 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② 조세감면 신청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신규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이며, 증자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규투자 조세감면 규정을 준용하여(제121조의2 및 121조의3) 정합니다. 단,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 통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만 감면적용) 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하나,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0호 별표2)

조세감면(조세감면내용 변경,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시 첨부서류(제5조 관련)

- 당해기술에 대한 설명서(영어 등 외국어로 된 자료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
  -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Catalog 등 참고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한다)
  - 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 표시할 것
  - 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 신성장동력산업 대상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 등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등
  - 당해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 당해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 또는 소요기간 등)
  - 당해기술과 동종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를 제3국에 공여한 실적
  - 기타 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신성장동력산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시행령 제116조의2제25항)
  -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하, 감면관련 사업)은 제품 전체 공정 중 신성장산업기술이 사용되는 감면공정을 제외한 비감면공정의 사업을 의미하며 감면대상 사업과 감면관련 사업의 생산방식 및 공정표 등의 자료

③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이 결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사실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에 대해 비감면 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신청 세부절차 〉

Step 1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	<p>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7항</p> <p>확인방법: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만 신청 가능</p>
Step 2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p>관련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p> <p>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팀</p> <p>수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02-3497-1967), 외국환은행(본·지점)</p>
Step 3	조세감면신청	<p>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p> <p>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p> <p>신청기간</p> <p>① 신규: 당해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p> <p>② 증자: 신규에 준함</p> <p>③ 변경: 변경사유일로부터 2년 이내</p>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3부</li> <li>• 조세감면신청서 3부(제80호 서식)</li> <li>• 신성장동력산업기술증명자료 3부</li> </ul>
Step 4	조세감면여부 결정	<p>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p> <p>처리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및 신청기술 관련 주무부 장관</p> <p>결정방법:</p> <p>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청기술 관련 주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조세감면 결정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결정함</p> <p>처리기간:</p> <p>신청일로부터 20일(기술자료가 부족하거나 관계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료 보완 요청 및 처리기간 연장 통보)</p>
Step 5	조세감면 여부 결정통보	<p>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 항</p> <p>처리기관: 기획재정부 장관</p>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투자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감면세액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제도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 감면세액 추정내용 〉

추징사유	대상조세	추징범위
등록말소 및 폐업 하는 경우	법인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말소 ·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관세: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감면기준에 미달	법인세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투자신고 후 5년 이내(고용관련 조세감면 기준은 3년)에 출자목적물 납입 및 차관도입, 고용인원이 기준에 미달	법인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신고내용 및 시정명령 불이행	법인세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소유주식을 대한민국국민 등에 양도	법인세	주식 등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면 당시 외국인투자가 소유주식 등에 대한 양도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급하여 3년내 감면세액 중 양도 후 외국인투자가의 잔여 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한 감면세액
	취득세, 재산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주식양도 비율
출자목적물의 신고 목적 외 사용 · 처분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관세: 3년)이내에 신고 목적 외 에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외국투자자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추징세액 = 주식 등의 비율의 미달일 전 5년 이내 감면한 세액 × 주식 등 미달비율

다만, 아래의 사유에 대해서는 추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가 그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기업이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등

### 1-3 기타 조세지원

####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와 같이 법에서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

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단, 동 사항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은 아래의 두 가지 과세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만 적용이 되며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19% 단일세율이 적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근무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의 100분의 19에 해당하는 단일세율 적용(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며 소득세 관련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등 규정은 미적용됨. 또한 일몰조항이므로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적용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미정)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의미)
-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단, 외국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 기본공제 외의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미적용)

###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 한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제도입니다.

\* 특정한 거래: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 ▶ 제도이용의 효과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통해 세법해석 관련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기업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질의한 사실관계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 신청대상 및 요건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포함)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 가정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항
-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

###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국세청장(법규과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링크 - 세법해석 사전답변]

- 신청은 사업자 본인이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현금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의 신성장 동력산업기술 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정해진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금지원제도 개요
- 현금지원 신청절차
- 현금지원 사후관리

### 2-1 현금지원제도 개요

#### (1) 지원대상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아래 “소재·부품산업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이나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과급효과나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소재·부품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3	섬유제품 제조업; 제조업;의복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 업종별로 아래 “현금 지원 대상 업종별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수” 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업종별 현금 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C B F H J N Q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A D G I K M R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E P 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인력 10인 이상, 1억 원 이상, 모기업 지분 50% 이상, 모기업 과거 5년 평균매출 3조 원 이상 혹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자산규모,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인정하는 기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지원한도

현금지원 한도 산정은 중앙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상담당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간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한도 산정위원회에서 산출하며, 산정된 현금지원 한도 내에서 외국인과 투자유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국유, 공유 토지를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함으로써 임대료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신청사업기간까지 감면 받은 임대료를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과 현금지원은 같은 항목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지원금의 총액은 현금지원한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3) 재정자금 분담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0:50(다만,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함)
-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4) 법정 사용용도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받은 현금지원금을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2-2 현금지원 신청절차

### (1) 협상 및 지원신청·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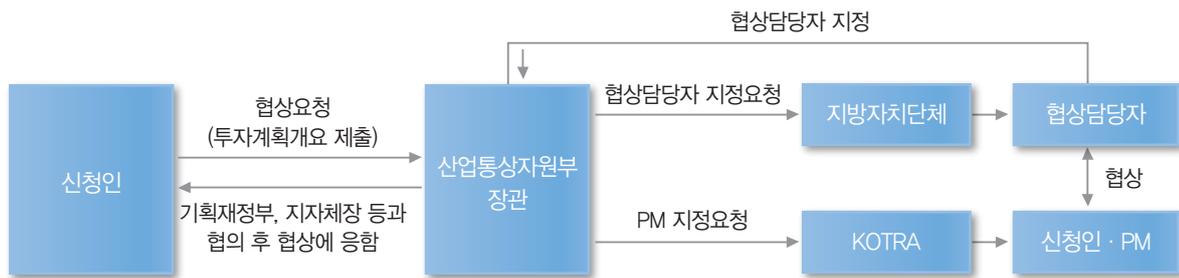
현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며, 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이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현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현금지원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제출 전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협상 또는 상담요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상담을 요청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담 또는 협상을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협상담당자)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상담당자를 지정 요청합니다. 또한 신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 현금지원 평가기준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및 기술이전효과(기술성)
- 고용창출규모
-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산업성)
- 입지지역의 적정성
-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재무성)

### 〈협상 및 지원신청·평가〉



### (2) 지원결정 및 계약체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금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지급액, 지급방식이 포함된 현금지원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한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을 결정하며, 지원은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됩니다. 다만, 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 및 계약체결〉



### (3) 제출서류

- 현금지원신청서(별지 서식)
-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각 5부
- 신청인의 재무제표 5부(중액투자의 경우 외투기업의 재무제표 포함)
-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제공확인서 사본 5부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기신고의 경우)
- PM 의견서 1부

※ 투자계획서 포함사항

- 신청인의 주요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 현황을 포함하고, 사업보고서 등 이용 가능한 관련자료 별도 제출)
- 총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금액
- 입지계획(지역, 규모, 취득 방식, 비용 등 포함)
-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계획(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
-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계획(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
-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 포함)
-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국내외의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 포함)
- 투자기업의 10년간 사업성 전망(투자수익률, 순현재가치 등 구체적 투자수익성 자료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 등에 대한 내용과 관리계획 포함)
- 향후 5년간 추정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및 근거자료를 별도 제출)
- 향후 5년간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 및 총괄표(이공계의 학력별 인원, 임금수준별 인원, 동종업계와의 평균 임금수준 비교 등을 포함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및 내외국인 구분)
-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계획(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 학력별 연구개발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포함)
- 한국을 투자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대체 투자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기능 수행여부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4) 현금지원금 지급 및 지급기한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재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현금지원금 지급방법〉

지급항목	지급방법
토지매입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
임대료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li> <li>•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li> <li>•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li> </ul>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 기타 현금지원의 지급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5)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

사전심사제도는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KOTRA(Invest KOREA)에서 사전에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을 건의하여 현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적극적인 기획 투자유치 운영방식입니다. 지원신청을 받아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과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현금지원 여부는 신청서 접수 이전에 결정하게 됩니다.

KOTRA(Invest KOREA)는 현금지원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할 후보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문가 사전 검토를 거쳐 협상안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외국인투자위원회 상정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현금지원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는데, 심의 후 1년 이내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상타결 이후 계약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만약 기간 내에 협상 및 신청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기술의 국내 도입 및 개발현황 등을 감안하여 1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사전심사 절차



## 2-3 현금지원 사후관리

### (1) 신청인의 책무

신청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와 투자지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물, 시설 및 장비 등 모든 자산(공사중인 자산 포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구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금지원을 받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계약은 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 이상의 견적서 징구 등 현금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금지원을 받은 자산을 당해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금지원금은 배당 및 로열티 등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는 결산보고서 외에 매년 연구개발 활동 현황 및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현금지원금의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현금지원 계약기간 중 신청인의 투자지출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신청인은 지급받은 현금지원금을 사용한 후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현금지원이 완료된 경우 당해연도의 사용잔액 및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하게 됩니다.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3년 이내 해고 시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합니다(다만, 이공계 인턴사원 제외).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현금지원계약서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금액(미 달러표시를 기준으로 함)보다 실제 외국인투자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비율만큼 현금지원금액을 감액 조정합니다.

현금지원 신청인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계약기간까지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주무부처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입지지원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유치하기 위한 입지지원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중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으로 분류됩니다.

외국인투자 입지제도는 지정목적에 따라 입주자격, 유치업종, 투자 인센티브(임대료, 조세, 관세, 현금)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장설립인허가 절차가 용이한 계획입지라 할지라도 투자입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 〈 외국인투자 입지 지정현황 〉

(2016년 7월 기준)

주요 입지 제도	지정지역	현황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천안, 대불, 사천, 오창, 구미, 장안1, 인주, 당동, 지사, 장안2, 달성, 오성, 천안5, 월전, 문막, 진천산수, 송산2, 국가식품(익산), 충주, 구미(부품), 포항(부품), 익산(부품), 창원(부품), 미음(부품), 송산 2-1	25
	개별형	제조업(70 개사), 물류업(2개사), 관광업(8개사)	80
	서비스형	대전	1
* 경기도 외투기업 전용 임대지구	현곡, 포승, 추팔, 어연한산	4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형	울산, 동해, 군산, 김제, 대불, 울촌, 마산	7
	항만·공항형	부산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6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광양만권, 인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새만금사업지역), 동해안, 충북	8	

- 외국인투자지역
- 소재·부품 전용공단
- 자유무역지역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 입지 인센티브

## 3-1 외국인투자지역(Foreign Investment Zone)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투자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투자지역은 지정요건, 입주자격, 입주한도, 투자인센티브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Complex-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토지 등을 소유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부지 공급이 필요한 외국인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저리로 임대할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으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주로 제조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한도(입주계약 존속요건 중 하나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한 FDI(임차한 부지 가액의 1배 이상)의 투자와 '공장 설립 완료'는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공장건축면적은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한 부지면적 대비 12% 이상 되어야 합니다.

반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Individual-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맞춤형 입지로서, 외국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형 투자지역의 면적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로 지정합니다. 개별형 투자지역은 조세 감면 기간이 7년(최초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50%만큼 감면)으로 단지형 5년(최초 3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50%만큼 감면) 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Service-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연구개발

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저 투자금액은 임차한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분의 100 이상이며, 건물건축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인 40%를 적용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이행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단지형과 개별형 비교〉

구 분	단지형 외투자지역	개별형 외투자지역
개 요	중소규모 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에 일부 지정('94~)	대규모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심의 지정 ('97~)
위 치	산업단지(국가 및 일반)	제한 없음(희망지역)
지정(입주)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요건: 상기 참조</li> <li>입주요건: 외국인투자지분율 30% 이상, 1억 원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기준: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시 심의 지정 (제조업 3천만 달러, 관광업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 등)</li> </ul>
입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지매입 후 임대지원</li> <li>토지매입 국비 및 지방비 비율 * (수도권) 30:70, (비수도권) 60: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지매입 후 임대지원(요청시)</li> <li>토지매입 국비 및 지방비 비율 * (수도권) 30:70, (비수도권) 60:40</li> </ul>
조세감면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li> <li>(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li> </ul> </li> <li>감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 5년 형) 최초 3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50%만큼 감면</li> <li>(지방세): 최장 15년 이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감면요건은 지정요건과 동일</li> <li>감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 7년 형) 최초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50%만큼 감면</li> <li>(지방세): 최장 15년 이내</li> </ul> </li> </ul>

구 분	단지형 외투자지역	개별형 외투자지역
부지임대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백만 달러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 10년간 100% 감면,</li> <li>• 5백만 달러 이상 제조업 75% 감면 (소재·부품 전용공단 내에서는 100%)</li> <li>•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200명 이상 제조업: 100% 감면</li> <li>•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제조업: 90% 감면</li> <li>•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70명이상 제조업: 75% 감면</li> </ul>	지정 및 임대 시 100% 감면
입주한도(F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이행(이후 계속 유지)</li> <li>• 부지가액(공시지가)의 1배 이상 투자(FDI 기준)</li> <li>• 공장건축면적: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을 적용(최소 12%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이행 (이후 계속 유지)</li> <li>• 업종별 최소투자금액 등 지정요건 충족 (부지가액의 2배 이상)</li> </ul>

※ 외투자지역 부지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 종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관련 사항은 법령 개정 중으로 위 내용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결과 확인 필요 (최초 근거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삭제하고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정)

### (1) 단지형 투자지역 지정 요건 및 현황

#### 지정요건

- (신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100분의 60 이상, 33만㎡ 면적 이상
  - \* 동일 광역지자체내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신규 또는 변경지정 제한
- (비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대비 100분의 30 이상이고 명시적 입주수요가 단지면적대비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82.5만㎡ 면적 이상
- (기존지역 확장요건) 기 지정면적 대비 입주율이 80% 이상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확장대상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즉시입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60% 이상

#### 입주자격 및 입주한도

- (입주자격)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
  - \* 단, 대불표준형공장은 10%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사업은 50% 이상일 것
- (최소 투자금액) 공장부지가액(취득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의 1배 이상 투자금액을 5년 이내 유치해야 함
- (공장건축면적)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최소 12% 이상)을 적용하고 이를 5년 이내 완료해야 함

#### 부지 임대료

관리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 간 입주계약 체결(매 10년마다 갱신 계약) 후 총 50년간 임대 가능

감면임대료				정상임대료	현실임대료	
100%		90%	75%		1%	5%
1백만 달러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10년간 감면 후 투자금액 및 고용에 따라 감면)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200명 이상 제조업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제조업	5백만 달러 이상 제조업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 자수 70명 이상 제조업	입주계약 이행 기업에 적용	입주계약 미 이행기업, FZ내 국내기업 (협력업체)

※ 5백만 달러 이상 제조업 : 소재·부품 전용단지 100%, 산업단지 내 50% 감면  
 ※※ 외투지역 부지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사항은 관련 법령들을 개정 중으로 위 내용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결과 확인 필요 (최초 근거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삭제하고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정)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입주계약 시점의 현실임대료 기준 1년분을 징수하고 입주기업 요구 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최초 입주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 전액 납부, 갱신계약 시 임대보증금 추가납부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감면 가능

### 사업계획의 이행

- 입주한도(외국인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는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사업계획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사업계획 이행기간 후에도 입주자격(외국인투자지분을 30%, 1억 원 이상) 및 입주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함
- 입주자격 미달 시 현실임대료를 부과하고 불가피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현실임대료를 적용
-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현실임대료를 적용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초과면적분에 대해 초과면적분에 대해 현실임대료를 적용
- 외국인투자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한 경우로서 장기차관의 상환으로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현실임대료를 적용
- 공장건축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이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현실임대료를 적용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면적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초과면적분에 대해 현실임대료를 부과함
- 사업계획을 이행치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반환할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입주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현실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감면 받은 임대료는 전액 환수함
- 분양 받은 산업용지는 분양계약 후 5년간 처분 제한, 10년 이내 처분 시 매각대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수
- 공장 등의 착공(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1호)은 입주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착공해야 하며 공장설립은 5년 내에 완료해야 함

## 협력업체 입주제도

-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 가능
- 평가위원회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의 하에 허용하며, 협력업체는 5년마다 갱신계약
- 임대료는 5%의 임대료를 부과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 ('16년 12월말 기준) 〉

연번	구분	최초 지정일	임대면적 (천㎡)	입주면적 (천㎡)	임대 잔여면적 (천㎡)	2016년 월임대료 (원/㎡, 월기준)	입주 기업수
1	천안 (충남)	'94.10.13	491.4	491.4	0	291	42
2	대불 (전남)	'98.08.29	1,602	1,591.8	22.6	64	37
3	사천 (경남)	'01.08.17	495.9	495.9	0	199	15
4	오창 (충북)	'02.11.06	446.3	414.1	32.2	213	10
5	구미 (경북)	'02.11.06	332.4	190.1	142.3	149	10
6	장안1 (경기)	'04.09.30	418.2	309.5	108.7	245	14
7	인주 (충남)	'04.12.21	164.7	159.5	0	150	7
8	당동 (경기)	'05.09.12	239.5	229.3	10.2	383	6
9	지사 (부산)	'05.11.30	298.1	239.5	58.6	384	10
10	장안2 (경기)	'06.12.21	368.9	148.5	220.4	303	4
11	달성 (대구)	'08.09.10	104.2	84.0	20.2	149	5
12	구미 (부품)	'09.03.09	246.3	149.7	96.6	152	6
13	오성 (경기)	'09.09.03	353.9	42.9	311	323	5
14	포항 (부품)	'09.09.03	327.2	129.6	197.6	127	2
15	익산 (부품)	'10.03.12	319.4	191.8	127.6	103	3
16	창원 (부품)	'10.10.14	71.3	32.8	38.5	451	2
17	미음 (부품)	'11.12.28	299.6	131.6	210.3	439	7
18	천안5 (충남)	'12.12.21	336.2	232.1	104.1	207	9
19	월전 (광주)	'13.05.15	99.1	59.4	39.7	156(1차) / 250(2차)	3
20	문막 (강원)	'13.12.10	99.1	35.2	63.9	249	2
21	진천산수 (충북)	'14.8.20	108.4	108.4	0	145	3
22	송산2 (충남)	'15.10.12	134.0	100.0	34.0	290	2
23	국가식품 (전북)	'15.10.12	116.0	0	116.0	-	0
24	충주 (충북)	'16.07.18	335.2	-	-	-	-
25	송산 (충남)	'16.12.20	165.3	-	165.3	-	-

## (2) 개별형 투자지역 지정 기준 및 현황

- (지정절차)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맞춤형 입지로서 업종별 지정기준을 충족 시,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정계획을 기초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합니다.
- (지정기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은 법 제2조 제1항 제4조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개별형 투자지역은 지정 신청 전에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업종	지정기준
제조업, 고도기술*, 산업지원(물류)	FDI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산업지원(물류외)	FDI 2천만 달러 이상 (관광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등)
물류업, 사회기반	FDI 1천만 달러 이상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
연구개발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연구개발시설 - FDI 2백만 달러 이상(석사 이상 연구경력 3년 이상 인력 10인 이상)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사항은 관련 법령들을 개정 중으로 위 내용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결과 확인 필요 (최초 근거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삭제하고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정)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연번	구분	위치	면적 (천㎡)	최초 지정일	연번	구분	위치	면적 (천㎡)	최초 지정일
1	한국경남태양유전(주)	경남 사천	171.6	1999-10-22	26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한국(유)	경북 구미	228.7	2008-03-31
2	한국제이에스티(주)	경남 양산	20.2	2000-03-14	27	프렉스에어코리아(주)	충남 아산	15.8	2008-07-30
3	코리아오도글라스(주)	세종특별시	190.5	2000-12-30	28	파워카본테크놀로지(주)	경북 구미	74.5	2008-12-18
4	한국바스프(주)	전남 여수	678.7	2000-12-30	29	플무원다논(주)	전북 무주	119.9	2009-02-27
5	한국바스프(주)	전북 군산	6.5	2001-01-12	30	이스트만화이버코리아(주)	울산 남구	37.7	2009-08-26
6	동부하이텍	충북 음성	137.2	2001-06-29	31	버자아제주리조트(주)	제주 서귀포	744.2	2009-11-12
7	동우화인켐(주)	경기 평택	252.3	2003-12-29	32	징콥스코리아(주)	경북 경주	119.1	2010-01-20
8	아사히초차화인테크노한국(주)	경북 구미	341.1	2004-12-21	33	서한엔티엔베어링(주)	경북 경주	86.9	2010-01-29
9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주)	부산 사하	67.9	2004-12-23	34	롬앤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	충남 천안	50.1	2010-09-30
10	도레이첨단소재(주) 3공장	경북 구미	191.4	2004-12-27	35	에드워드코리아(주)	충남 천안	40	2010-09-30
11	아반스트레이트	경기 평택	88.8	2004-12-30	36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경기 부천	6.6	2010-12-29
12	한국호아전자(주)	경기 평택	18.6	2004-12-30	37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전남 여수	284.3	2010-12-30
13	린텍코리아(주)	충북 청원	49.6	2004-12-31	38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충남 당진	55.8	2010-12-30
14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칭(주)	충북 청원	164.8	2005-05-27	39	카길유지가공(유)	충남 당진	52.1	2010-12-30
15	(주)린데코리아	경기 용인	26.7	2005-11-23	40	현대코스모(주)	충남 서산	103.4	2010-12-30
16	프렉스에어코리아	경기 화성	48.6	2005-11-28	41	다우케미컬오엘이디(유)	충남 천안	39.5	2011-05-20
17	(유)한국타임즈항공	경기 김포	335.5	2006-03-29	42	롯데엠알시(주)	전남 여수	70.6	2011-05-20
18	한국유에스지보랄(주)	충남 당진	17.8	2006-12-26	43	현대아반시스(주)	충북 청원	145.3	2011-05-20
19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주)	경북 구미	63.9	2006-12-28	44	한국몰렉스(주)	경기 안산	13.9	2011-05-26
20	버숨머트리얼즈 피엠코리아(유)	울산 남구	27.4	2006-12-28	45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주)	경기 의왕	20.6	2011-07-20
21	롯데엠알시(주)	충남 서산	66.6	2007-04-30	46	태평양에어콘트롤공업(주)	충남 아산	10.1	2011-07-20
22	스탠포드호텔코리아(주)	서울 마포	3.4	2007-05-17	47	대구텍(유)	대구 달성	57.8	2011-08-01
23	일상해양산업(주)	전남 여수	115.2	2007-11-20	48	에스에스엘엠(주)	대구 달성	110.4	2011-08-01
24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울산 울주	43.3	2007-12-06	49	한국유미코아신소재(유)	충남 천안	31.7	2011-12-20
25	한국쓰리엠하이테크(유)	전남 나주	5.5	2007-12-27	50	동서석유화학(주)	울산 남구	28.7	2011-12-22

연번	구분	위치	면적 (천㎡)	최초 지정일	연번	구분	위치	면적 (천㎡)	최초 지정일
51	에어프로덕츠코리아(주)	충남 아산	8	2012-03-12	66	이니츠(주)	울산 남구	22.1	2014-06-26
52	골드펌프(주)	충북 청원	47	2012-09-21	67	엔알지(주)	충남 예산	24.3	2014-06-30
53	동우화인켐(주)	전북 익산	38.7	2012-09-28	68	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	울산 남구	104.4	2014-11-13
54	에이에스이코리아(주)	경기 파주	27.4	2012-09-28	69	도레이첨단소재(주) (4공장)	경북 구미	269.7	2014-12-16
55	삼성코닝어드밴스드 클라스(유)	충남 아산	131.3	2012-10-02	70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 스코리아(주)	전남 여수	41	2015-04-09
56	아드반테스트코리아(주)	충남 천안	39.6	2012-10-02	71	타이코에이엠피(주)	경북 경산	81.3	2015-11-30
57	현대헬베이스오일(주)	충남 서산	19	2012-10-02	72	한국에이에스 엠지니텍(주)	경기 화성	7.2	2015-12-03
58	닛소남해아그로(주)	전남 여수	8.6	2012-10-05	73	에어프로덕츠코리아(주)	경기 평택	34.1	2015-12-03
59	울산아로마틱스(주)	울산 남구	168.4	2012-10-11	74	람정제주개발(주)	제주 서귀포	1,158	2015-12-04
60	백통산원(주)	제주 서귀포	549.4	2013-10-08	75	녹지제주헬스케어(유)	제주 서귀포	224.7	2015-12-30
61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	전남 여수	150	2013-12-12	76	한국유미코아신소재(유)	충남 천안	83.2	2016-07-20
62	도레이첨단소재	전북 군산	215	2013-12-13	77	쿠라레코리아(유)	울산 남구	6.5	2016-07-21
63	에어프로덕츠코리아(주)	경기 화성	5.9	2013-12-20	78	스탠포드호텔앤 리조트(주)	경남 통영	17.2	2016-07-21
64	한국니토옵티칼(주)	경기 평택	13.2	2013-12-24	79	코오롱바스프이노폼(주)	경북 김천	26.3	2016-07-25
65	레고랜드코리아(유)	강원 춘천	281.1	2014-04-29	80	에어프로덕츠코리아(주)	울산 울주군	6.5	2016-12-22

### (3) 서비스형 투자지역

- (도입 배경) 공장용지를 저가로 임대 공급하는 제조업 중심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건물 수요가 높은 연구개발 및 서비스사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산업단지 내 및 이외의 지역(건물 포함)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지정요건) 신규 및 추가 지정 지역(부지) 또는 건물은 즉시 입주가 가능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 된 입주수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국·공유 재산(건물 포함)의 일정공간을 선지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고 된 입주수요가 지정면적 대비 30%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형 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 및 조건〉

구분	세부업종	고용기준	사업계획조건(FDI)
연구개발업	자연공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 7012)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 이상 투자
금융 및 보험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15인 이상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문화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광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제외)		

### 3-2 소재·부품 전용공단(Material and Part Complex)

#### (1) 도입 배경

소재·부품 전용공단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중 첨단 소재·부품 기업들의 입지에 특화된 산업단지입니다. 한국의 대형 수요기업에 근접하고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입지를 고려하여 구미시, 포항시, 익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전용공단을 지정하여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소재·부품 전용공단 지정현황 〉

공단	구미	포항	익산	창원	부산미음
지정일	'09.03.09.	'09.09.03.	'10.03.12.	'10.10.14.	'11.12.28.
조성면적 (천㎡)	246.3	327.2	319.4	71.3	299.6
유치산업	디스플레이, 모바일, 전자 등 부품소재업종	철강, 조선부품, 소재 등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 화학 등	자동차, 기계장비, 전기전자 화학분야 등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7개 업종

\* 출처: 소재·부품 전용공단 홈페이지 [www.pmcomplex.go.kr](http://www.pmcomplex.go.kr)

※ 소재·부품 전용공단은 입주업종으로 소재·부품 전문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의 소재·부품 업종에 입주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주한도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부지면적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주요 투자 인센티브

	요건	내용
조세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li> <li>물류업 : 투자금액 500만 달러 이상</li> </ul>	법인세 5년간 감면(최초 3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 감면) 지방세 감면 : 최장 15년 이내 100%
임대료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li> <li>투자금액 500만 달러 이상 소재부품제조업</li> </ul>	임대료 감면 : 100%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사항은 관련 법령들을 개정 중으로 위 내용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결과 확인 필요 (최초 근거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삭제하고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정)

### 3-3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출목적의 제조업, 창고·물류·하역·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격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 물류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금융·통관·정보처리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

#### ※ 입주우선순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대상업종
- 기술이전 및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사항은 관련 법령들을 개정 중으로 위 내용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결과 확인 필요 (최초 근거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삭제하고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정)

### (1) 인센티브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li> <li>• 제조업: 1천만 달러</li> <li>• 물류업: 5백만 달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5년간 감면(최초 3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 감면)</li> <li>*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7년간 감면(5년 100%, 2년 50%)</li> <li>•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15년간 100% 감면</li> </ul>
관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기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비관세</li> <li>•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은 관세 면제 또는 환급</li> </ul>	
부가세 영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li> <li>•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li> </ul>	
임대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부지 및 표준공장 무상 임대(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장 부지 및 표준공장 임대료 10년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백만 달러 이상 신규투자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100% 감면</li> <li>- 5백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 부품소재산업: 100% 감면</li> <li>- 5백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 제조업: 75% 감면</li> </ul> </li> </ul>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사항은 관련 법령들을 개정 중으로 위 내용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결과 확인 필요 (최초 근거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삭제하고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정)

### (2) 지정현황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형과 공항·항만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형으로는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 7개 지역, 공항·항만형으로는 인천공항과, 부산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등 6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도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울산	김제
지정일	'07.1.1.	'00.10.6.	'02.11.21.	'05.12.12.	'02.12.12.	'08.12.8.	'09.1.6.
면적(천㎡)	957	1,256	1,157	248	344	837	991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구분	부산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지정일	'02.1.1.	'08.12.8.	'09.3.30.	'02.1.1.	'03.1.1.	'05.4.6.(1단계) '07.12.31.(2단계)
면적(천㎡)	9,363	724	1,429	8,880	2,014	3,015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 3-4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 활동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입니다.

또한 다양한 세제혜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편리한 생활환경과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외국 교육기관·병원의 설립 및 운영, 외국어 서비스, 외국 화폐·방송 등의 허용,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과 같은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외투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새만금사업지역), 동해안권, 충북 등에 지정하여 앞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 동북아 물류 중심지,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 입니다.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지(2014.8월)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특별법)으로 편입

※ 입주자격

-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1) 지정현황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구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동해안권	충북
위치	인천(연수구, 중구, 서구)	부산(강서구), 경남(창원시)	전남(여수, 순천, 광양), 경남(하동군)	대구, 경북(경산, 영천, 포항)	전북(군산, 부안)	경기(평택)	강원(강릉, 동해)	청원, 충주
면적(km <sup>2</sup> )	123.97	51.23	77.69	19.73	28.4	4.39	8.95	7.21
공항항만	인천공항 인천항	김해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여수공항	대구 국제공항	군산· 군장신항	평택당진항	양양공항, 동해항	청주공항
추진기간	2003-2022	2003-2020	2003-2020	2008-2020	2008-2020	2008-2020	2013-2024	2013-2020

구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동해안권	충북
사업지구	송도, 영종, 청라	신항만, 명지, 지사, 두동, 응동	광양, 울진, 신덕, 화양, 하동	대구, 영천, 경산, 포항	군산, 새만금, 고군산	포승, 현덕	북평, 망상, 옥계, 구정	바이오밸리, 에어로, 예코
유치산업	국제비즈니스, IT, BT, R&D, 항공, 물류, 관광, 금융, 레저, 첨단산업	부산신항 거점 물류, 국제업무 첨단부품소재 및 R&D, 여가·휴양·레저	물류, 제조, 철강, 기계, 조립, 금속, 신재생에너지, 관광, 레저	첨단수송 부품소재, 첨단메디컬, IT융복합	첨단소재, 화학, 자동차부품 및 동력, 에너지 연관, MRO, 산업물류, 첨단지식기반 산업, R&D, 국제협력, 문화관광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소재, 화학, 물류	첨단소재, 물류, 비즈니스 산업 의료·관광·해양관광 등 명품관광산업, 비철금속산업, 초경량첨단부품 소재산업,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환경	BT, IT, 첨단업종 의료연구개발 기관,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항공·물류·항공정비, 자동차전장 부품, 신재생에너지

\* 출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www.fez.go.kr

(2) 인센티브

구분	조세구분	감면기간/감면율	감면요건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국세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감면</li> <li>다음 2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50%만큼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3천만 달러 이상</li> <li>관광업: 2천만 달러 이상</li> <li>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li> <li>R&amp;D: 2백만 달러 이상</li> </ul>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3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감면</li> <li>다음 2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50%만큼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li> <li>관광업: 1천만 달러 이상</li> <li>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li> <li>의료기관: 5백만 달러 이상</li> <li>R&amp;D: 1백만 달러 이상</li> </ul>
	관세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수입 자본재	
	지방세	취득세	15년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li> <li>관광업: 1천만 달러 이상</li> <li>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li> <li>의료기관: 5백만 달러 이상</li> <li>R&amp;D: 1백만 달러 이상</li> </ul>
		재산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재정지원	현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최소 FDI의 5% 이상 지원</li> <li>공장, 연구시설 설치비,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조건) 외투비율 30% 이상 외투기업 중</li> <li>고도기술 수반 여부*,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등 평가하여 결정</li> </ul>		
	기반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원조건) 국비 50% 지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시 전액 지원</li> </ul>		
	외국교육, 연구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교육, 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조건) 명성도, 국가발전기여도 등 평가요소 충족</li> </ul>		
	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이후 50년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 임대 가능</li> <li>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li> </ul>		
기타지원	노동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등 의무 고용 배제,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등</li> </ul>		
	외환거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당사자간 직접 지급</li> </ul>		

\* 출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www.fez.go.kr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사항은 관련 법령들을 개정 중으로 위 내용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결과 확인 필요 (최초 근거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삭제하고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정)

### 3-5 외국인투자 입지 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 입지 지원제도 비교

구분	외국인투자지역(FZ)		자유무역지역(FTZ)		경제자유구역(FEZ)	새만금
	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공항, 항만, 물류형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정 목적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외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	외자유치, 국제물류기지 육성	외자유치,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균형 발전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정 위치	산업단지내	제한 없음	항만, 공항의 주변 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유통단지, 화물터미널등	국제공항·항만 주변지역	새만금사업지구
지역 특성	임대단지운영 원칙	개별사업장 단위 지정	비관세지역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 2천만 평 - 6천만 평	산업용지는 FEZ와 동일
지정 권자	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새만금개발청장 * 새만금위원회 의결
관리 권자	· 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관리기관 · 그 외 : 시·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입주자격	외국인투자금액 1억원 ↑, 외투자분 30% ↑ · 제조업, 물류업 등 · 계약후 5년내 임대 부지가액1배 이상의 FDI 조건	외투기업&FDI조건 · 제조업: 3천만 달러 ↑ · 관광업: 2천만 달러 ↑ · 물류업: 1천만 달러 ↑ · R&D: 2백만 달러 ↑ (3년 ↑ 석사 10인)	· 수출주목적 내외국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		외투기업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국내기업 및 외투기업
조세 감면 요건	· 제조업: 1천만 달러 ↑ · 물류업: 5백만 달러 ↑	위 지정요건과 동일	단지형 외투자지역과 동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제조, 관광: 1천만 달러 ↑ · 물류, 의료기관: 5백만 달러 ↑	· 제조, 관광: 1천만 불 ↑ · 물류, 의료기관: 5백만 불 ↑
감면 대상 조세	· 법인세: 5년 · 지방세: 15년 범위 내	· 법인세: 7년형 · 지방세: 15년 범위 내	· 법인세: 5년형 (3년 100%, 2년 50%) · 지방세: 15년 범위 내 조례로 조정		· 법인세: 5년형 (개별형외투조건 충족시 7년형) · 지방세: 15년 범위 내	· 법인세: 5년형(새만금위원회 의결시 7년형) · 지방세: 8년(새만금위원회 의결시 10년)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법인세 7년형(5년 100%, 2년 50%) 감면						
관세 감면	자본재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관세유보(수입물품, 자본재)		자본재 5년간 면제	자본재 5년간 면제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수준 (관리기본계획 명시)		부지가액 10/1,000수준 (기재부 협의 후 관리권자 결정)		부지가액 10/1,000수준 (관리청 결정)	재산가액 1% ↑ (외투기업) 5% ↑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 고도기술* & 1백만 달러 ↑ : 100% (10년) 감면 · 일반제조 & 5백만 달러 ↑ : 75%(소재·부품전용 공단은 100%) 감면 · 250만 달러 이상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제조업: 100% 감면 · 250만 달러 이상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 제조업: 90% 감면 · 250만 달러 이상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 제조업: 75% 감면		국공유지일 경우 100% 감면  ·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장 부지 및 표준공장 임대료 10년간 면제 - 1백만 달러 이상 신규투자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100% 감면 - 5백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 부품소재산업: 100% 감면 - 5백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 제조업: 75% 감면		조례 등에 따라 관리청 결정(50%~100%)	· 고도기술&1백만\$ ↑ : 100% · 소재부품제조&5백만\$ ↑ : 100% · 250만불 이상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제조업 : 100% 감면 · 250만불 이상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 제조업 : 90% 감면 · 250만불 이상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 제조업 : 75%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사항은 관련 법령들을 개정 중으로 위 내용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결과 확인 필요 (최초 근거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삭제하고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정)

(2) 조세감면 : 국세(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li> <li>개별형 투자지역 입주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법인세)</li> <li>지방세(취득세, 재산세): 15년 범위 내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년간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5년 간: 외국인투자 비율 만큼 감면</li> <li>다음 2년 간: 외국인투자 비율의 50% 만큼 감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도기술*: 없음</li> <li>투자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3천만 달러</li> <li>관광업: 2천만 달러</li> <li>물류업: 1천만 달러</li> <li>R&amp;D: 2백만 달러&amp;석사 10인 이상 고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li> <li>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li> <li>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li> <li>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간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3년 간: 외국인투자 비율 만큼 감면</li> <li>다음 2년 간: 외국인투자 비율의 50% 만큼 감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1천만 달러</li> <li>관광업: 1천만 달러</li> <li>물류업: 5백만 달러</li> <li>R&amp;D: 1백만 달러</li> <li>※ 기업도시: 1천만 달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li> <li>기업도시 개발사업자</li> <li>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li> </ul>	국세(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간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3년 간: 외국인투자 비율 만큼 감면</li> <li>다음 2년 간: 외국인투자 비율의 50% 만큼 감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DI 3천만 달러 이상, 외투 50% 이상으로, 총 사업비 5억 달러 이상</li> </ul>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사항은 관련 법령들을 개정 중으로 위 내용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결과 확인 필요 (최초 근거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삭제하고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정)

(3) 관세 등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대상기간	대상자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li> <li>개별형 투자지역 입주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li> <li>개별소비세</li> <li>부가가치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 내 수입신고완료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li> <li>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반입외국 물품에 대한 관세가 유보되며, 반입 내국물 품에 대한 관세는 환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li> <li>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li> <li>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li> </ul>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사항은 관련 법령들을 개정 중으로 위 내용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결과 확인 필요 (최초 근거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삭제하고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정)

(4) 재정(입지) 지원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li> <li>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li> </ul>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li> </ul>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당해 지원을 통해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금액(FDI)의 50% 범위 내</li> <li>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외국인투자금액은 25% 수준 이상 유지)의 25% 범위 내</li> </ul>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i) 임대용지 지원 ① 용지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 및 매입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li> <li>• 매입비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국가 30%, 지자체 70%)</li> <li>- 비수도권(국가 60%, 지자체 40%)</li> </ul> </li> </ul>		
② 임대료 감면(국유재산) *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감면 대상	감면내용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 달러 이상	단지형 투자지역	100%
		산업단지	50%
	일반 제조업 & 5백만 달러 이상	단지형 투자지역	75%
산업단지		50%	
소재·부품기업 & 5백만 달러 이상	단지형 외투자지역(소재부품형)	100%	
※ 토지 소유권을 국가·지자체(광역시)가 공유로 보유하는 경우 각 소유 비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규정 달리 적용(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ii) 분양가 차액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 시 차액 보조</li> <li>-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li> </ul>		
(iii) 임대료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li> </ul>		

※ 외투자지역 부지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사항은 관련 법령들을 개정 중으로 위 내용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결과 확인 필요 (최초 근거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삭제하고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정)

**(5) 기타 지원내용**

-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지정 및 운영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현금 지원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면제
-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 프로젝트매니저란?**

- 정부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프로젝트매니저를 KOTRA 사장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프로젝트매니저의 자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직원,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PM교육 이수 시 주어집니다.
- 프로젝트매니저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제공 및 면담의 알선에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지원과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에 이르는 모든 제반 업무를 지원합니다.